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50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 : 임호선 · 이학영 · 권칠승

강준현 • 윤호중 • 정준호

김승원 • 윤준병 • 이병진

박정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현행법의 보호 범위를 재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 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 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 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 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명 · 신체에"를 "생명 · 신체 · 재산에"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를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
- 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 제1조(목적) |
|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 |
|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 | |
| 하여 <u>생명·신체에</u> 피해를 받 | <u>생명·신체·재산에</u> |
| 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 |
|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 | |
|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 제3조(정의) ① |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 | 4 |
| 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 | |
| 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 | |
| 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 | |
| 에서 <u>행하여진 사람의 생명</u> | 발생한 다음 각 목에 해 |
|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 | 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
| 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 |
|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 | |
|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 | |
|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 |
|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 | |
| 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 |
|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 |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 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u><신 설></u>

<신 설>

5. · 6. (생략)

② (생 략)

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기가 제12조, 제22조제 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

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적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